

안
세
재
경
저
널
회
원
영
·
2
0
2
2
년
2
월
2
3
일
(수)
·
주
간
제
8
화
·
특
리
제
1
5
5
9
화
2
0
2
1
년
도
개
정
세
법
후
속
시
행
규
칙
개
정
구
도
보
도
3
0
0
0
0
0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2/ 2/ 23 통권 1559호

CEO·CFO·COO · 회계책임자 · 조세전문가 · 재경실무자 · 총무담당자 · 모든 관리자용 **이름**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CEO는 실천가다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CFO · 회계실무자 · 조세전문가 정보

- 근로 · 퇴직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
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지방세 지원을 강화
한다

CMO · 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한 퇴직위로금액을 임원에
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퇴직소득으로 인
정됨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증여인데도 증여세 안 내는 비과세 · 공제금액 · 과세기준금액 등 10가지 >

개념, 구분	증여세 면세, 공제, 비과세 · 차감액 등	관련규정
배우자증여	10년 단위 증여합산, 6억원 공제 적용	상증법 제53조제1항제1호
자녀간 증여	직계존속, 직계비속간 증여 10년 단위 합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공제	상증법 제53조제1항제2호
친인척 증여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증여 : 10년간 1 천만원 공제	상증법 제53조제1항제4호
경조사 증여	모든 관계 증여,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증 여세 없음	상증법 제55제제2항
저가양수 고가양도	특수관계자간 적용, 거래대가와 시가와 ① 시 가×30% 또는 ② 3억원 중 적은 금액의 차액 은 증여 아님(특수관계 아니면 관계없음)	상증법 제35조제1항 (시행령 제26조)
부동산 무상사용	무상사용이익은 증여, 1억원까지는 증여 아님	상증법 제37조제1항
금전무상대출	타인의 금전 무상대출, 적정이율 4.6%, 1천만원 미만 제외	상증법 제41조의4
재산사용용역제공	낮은 대가는 증여(1천만원은 예외), 높은대가 · 무상 등(시가의 30%는 예외)	상증법 제42조
재산취득자금	재산취득자금, 채무상환 등(20% 해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은 제외)	상증법 제45조
증여세 비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익, 피부양자 교육비, 학 자금, 축하금, 혼수용품	상증법 제46조

(안사회계법인 세무지원본부 제공)

안사회계법인
02-829-7557

회계 · 경리 · 세무 · 재무 · 인사 · 노무 · 총무 · 법무 · 기획 · 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 · 보육 · 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59호 / 주간 8호

2022. 2. 23.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중여인데도 증여세 안 내는 비과세·공제금액·기준금액 등 10가지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2
C E O 에 세 이	CEO는 실천가다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복리후생비 사용 문의	5
	- 잡이익으로 처리한 이익에 연관된 비용 처리 질의 건	6
	-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 해당여부 질의 - 차량 렌탈관련 회계처리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근로·퇴직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통합투자 세액공제금액	9
	- 2022년 주요 세법 개정사항	10
직 장 인 Survival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난쟁이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 (기준법령부가-47, 2021.07.26)	12
	-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부 받은 날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서면법령법인-4136, 2021.06.29)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상속 주택, 상속 후 2·3년 동안 증부세 대상에서 제외	14
마 케 팅 Tax consulting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한 퇴직위로금액을 임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퇴직소득으로 인정됨	13
세 무 정 보	-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15
	-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지방세 지원을 강화한다	47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6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개념, 구분	범위, 내용, 계산방법, 근거규정 등	관련 세법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이 1호(1세대)당 85㎡이하(비수도권은 100㎡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
부가세 면제 범위	국민주택의 분양, 양도, 최초분양 후의 계속거래 등 + 국민주택건설용역 +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	조특법 제106조 제4호
부가세 면제 이유	서민 대중의 국민주택거래 가격에서 부가세 10% 부담을 낮춤	부가세 면세 제도
면제되는 건설용역	건설사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 주택법 · 하수도법 상 등록자의 국민주택 공급 + 관련 설계용역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의 제4항
직접건설분양	국민주택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 · 판매하는 금액	조특법 제106조 제4호
1차 원청사	국민주택건설사(토지주택공사, 일반 건설사 등)로부터 하도급 받은 경우	조특법 기본통칙 106-106-2
2차 하도급	국민주택건설 하도급사에게서 부분건설 등 재하도급 받은 경우	
재하도급 등 (열거된 업종 기준)	국민주택의 건설, 전기, 소방시설, 정보통신공사, 하수도, 국민주택 관련 설계용역	열거주의
단순납품은 과세	상기 열거된 국민주택건설 업종만 면세,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 부품의 단순납품은 과세됨	열거안됨

전 직원에게 꼭

CEO는 실천가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언덕위로 짐을 잔뜩 실은 수레를 끌고 올라가려고 끄꿍대는 일꾼이 있었다.

학자가 다가가서 그에게 말했다. “언덕의 각도가 몇 도이므로 힘의 방향을 몇도로 주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수레는 조금도 진전이 없었다. 정치가가 왔다.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모아’ 도와달라고 호소하며 열변을 토해냈다. 그러나 사람들은 냉담했다.

언론인은 수레가 잘 오르고 있는지, 정치가가 도와줄 사람을 동원하는데 성공하는지, 학자의 견해는 어떤지 취재하기 바빴다.

법조인은 차도(車道)에 들어와서 법에 저촉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팔을 걸어 붙히고 수레를 힘껏 밀어부치는 이가 있었다. 바로 경영자다. 수레는 힘차게 언덕을 올라가서 목표지점에 도착했다. 그들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이마에 땀을 닦았다. 오래전에 들은 뼈가 있는 우스개 얘기다.

“우리는 원천이 어떤 것이든 그 위대한 사상들을 가장 열성적으로 추구했던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떤 주저함도 없이 그 사상들을 채택하고 ‘실천’해왔다.”

잭 웰치의 말이다.

CEO는 실천가다. 실천하므로 가치를 생산하고 공급하며 이 시대 경영자 자본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리더다.

바로 경영이란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바를 선택하고 이를 열정적으로 실천에 옮긴 후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또 보상을 받는 일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일리있는’ 지식이나 말노름을 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선택을 강요받는다. 리스크(Risk) 없는 선택은 없다. 최상이라고 판단한 선택을 기반으로 실천할 뿐이다. 그런데 그 실천에는 도처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게 마련이다.

온갖 외부의 반론과 비판의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 작위적인 저항과 방해도 이겨내야 한

다. 또 도그마에 빠져서도 안된다. 더구나 제일 무서운 것은 스스로가 선택한 바에 대한 회의(懷疑)나 흔들림이다. 그것조차 극복하지 않으면 열정적이 될 수 없다. 열정없이 속도 가 나지 않는다.

경영에서 스피드는 생명이다. 정열을 바치지 않고 열리는 결실은 결코 없다. 그것이 실천이다.

바로 이 중심에 CEO가 존재한다. 따라서 CEO라는 실천가는 ‘긴장감 도는’ 현장에 있다. 아웃사이더나 연구실에 머무르는 사람이어서는 결코 안된다.

애플사 PC의 시조는 사실 스티븐 잡스가 아니라 스티븐 우즈니악이었다. 우즈라 종종 불리는 우즈니악은 천재적인 엔지니어였지만 경영마인드는 없었다.

잡스는 자신의 폭스바겐 버스를 팔고 우즈를 설득하여 그의 전자계산기를 팔아 1,300달러를 마련하고는 애플의 최초모델을 만드는데 도전했다. 정열에 넘치고 저돌적인 잡스의 도전정신과 실천력이 없었다면 애플사의 탄생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톰 피터스 말처럼 CEO는 일을 만들기(build-up)도 하지만 파괴를 감행하는 CDO(Cief Destruction Officer)여야 한다. 80년대 초 마흔 다섯이란 젊은 나이에 GE의 CEO회장이 된 잭웰치는 ‘웰치혁명’ 이라고 불릴 정도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적인 기업문화를 이끌어내면서 GE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했다. 따라서 그를 ‘창조적 파괴자’ 부른다.

한국의 현실을 냉철하게 돌아보자.

과연 CEO는 CEO로서 ‘실천’하고 있는가? ‘실천’할 수 있는가?

전문가의 지식을 강력히 흡수하며 추진력을 높이기보다 누구나 책임지지 않는 기묘한 방책으로 쓰이지 않는지 반성해 볼일이다. 그런 지식기반 사회는 바벨탑과 같을 뿐이다. 꾸준하고 열성적으로 땀이 배어 있는 참다운 지식이 뭉친 ‘지식 실천사회’여야 가치를 생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나마 알량한 지식조차 기득권화되어 있기 일췌다. 이런 저런 환경이 얽혀서 ‘투명성’이 낮은게 당연하다.

이러한 한국의 일부 현실이 CEO의 훌륭한 개혁적 파괴력을 포함한 실천력을 저해하는 게 아닌가. 즉, 훌륭한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게 아닌가. 모두 깊이 성찰해보아야 한다.

입으로는 정도경영(正道經營)을 표방하면서도 상당수의 CEO들이 불가피하게 마약중독처럼 편법에 중독되어 있는게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

더 나아가 ‘실패도 투자며 자산’이라는 신념으로 과감한 실천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가 더욱 필요하다.

CEO의 실천력! 그것의 증대야 말로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복리후생비 사용 문의

- Q** 본 원에서 처리하는 택시비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택시비의 경우는 통상 사전승인을받은 후 교통비로 처리하는것이 일반적이나, 야간근무 등으로 인해 사전승인이 어렵고, 업무관련 출장이 아닌 귀가의 목적일 경우 현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택시비를 꼭 교통비로만 처리해야맞는것인지 아니면, 위와같은 사유로 복리후생비로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 용도나 특성 등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할지의 여부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여비교통비가 원칙이며,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다면 복리후생비로 분류해도 됩니다.

잡이익으로 처리한 이익에 연관된 비용 처리 질의 건

- Q** 계정 질의 드리고자 Q&A 남깁니다.
 자사에서 잡이익으로 처리한 수익이 있는데 이에 관련된 용역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익은 매출이 아닌 잡이익으로 처리였으니 이에 맞추어 비용을 잡손실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용역수수료나 다른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A** 매출이 아닌 잡이익으로 반영하였어도 관련 비용에 대해 용역수수료 또는 잡손실 어느쪽으로 반영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귀사가 편리한 쪽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지입차 유류비 정산

- Q** 당사는 외부 지입차량과 계약을 체결하여, 월발생되는 지입료와 실제 운반하면서 발생하는 제비용(식대, 통행료)등의 증빙을 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제 운행거리 기준으로 이에 상당하는 유류비를 산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동 유류비 지원액을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처리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A ■■■ 지입차량과 계약 체결하여 유류비 포함한 총 발생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받기로 계약했다면 유류비도 포함시켜 처리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 해당여부 질의

Q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서비스/ 광고대행업으로 되어 있으며, 거래처와 홍보대행 계약 체결 후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법인 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조특법 제6조에 규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
는지 문의드립니다.

A ■■■ 조특법 제6조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업종은 같은 법 제3항에 열거규정되어 있는 업종만 적용되는 것으로, 광고대행업은 열거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차량 렌탈관련 회계처리

Q ■■■ 업무용 차량(승용차) 렌탈시 렌탈기간이 4년이면 금융리스로 처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운용리스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A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은 렌탈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 금융리스는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 귀사에게 이전되므로 귀사의 자산으로 반영하는 처리를 하는데 귀사가 리스업체와 운용리스로 계약했는지 금융리스로 계약했는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모두 금융리스로 합니다.

근로·퇴직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지급명세서는 소득자의 소득금액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 및 제출 등과 같이 사업자로 하여금, 1년간 모든 지급소득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2월말(근로소득·퇴직소득은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의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제출대상이 된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소득금액 등을 실제 지급하는 자가 제출함

지급명세서는 이자·배당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금액 등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일종의 과세자료이다.

즉,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그 내역을 기록한 자료로서,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비자발급을 위한 소득금액증명원, 각종 공적부담금 부과자료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지급명세서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자소득·배당소득·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그리고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수입금액 등이 모두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이 된다.

이처럼 각종 소득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금액의 국내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관련 지급명세서를 그 제출 기한내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근로소득 퇴직 소득은 3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구 분	제 출 시 기
근로·퇴직·사업소득	다음연도 3월 10일(사업소득 중 봉사료는 2월 말일)
일용근로소득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그 밖의 소득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지급명세서 제출은 전산매체가 원칙임

지급명세서 제출은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금융보험업자,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 법인, 복식부기의무자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정보통신망(HTS)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매체 제출자 중 직전년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10인 이하인 자는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0만원 이하의 복권 당첨금품 등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됨

실비변상적 급여 등 비과세근로소득과 10만원 이하 복권 당첨금품 등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p>●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p> <p>1.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p> <p>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p> <p>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러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p> <p>2의3.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p> <p>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p>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통합투자 세액공제금액

	일반	신성장 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기본공제	투자금액의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투자금액의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투자금액의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추가공제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인 경우 기본공제액의 2배 한도 내에서 초과 투자금액의 3%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 4%)		

화

연금저축과 IRP 비교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연 400만원(근로소득 1억2000만원 초과/종합소득 1억 원 초과시 300만원)	연 700만원
세액공제율	근로소득 연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6.5%, 근로소득 연 5500만원 초과는 13.2%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 한도	제한 없음	70%
중도인출 가능 여부	자유로움. 단 납입금전체와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 세 16.5% 부과	특정 사유 없으면 일부 인출 불가능, 전부 해지는 가능



2022년 주요 세법 개정사항

구분	개정 내용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 이전 재화의 공급 간주 대상 추가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동일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내에 공급시기 도래 시 선발급세금계산서 대가 수령 요건 제외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가로 공급한 재화·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기준 보완	신탁 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시가 과세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계산 보완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해 인정사유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 제외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계약의 해제·변경 등을 추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세액공제 재도입 * 발급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22년 7월 1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개인사업자 기준금액 확대(22년 7월 1일 시행) *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 → 2억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부과 제도 개선	부가세 예정고지·부과 제외 사유 확대 1) 30만원 → 50만원 미만 2) 재난 등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상 금액 과다기재시 가산세(0.5%)
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단축	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시기가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로 단축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수탁자)가 보증이행을 위해 처분하는 담보주택 부가세 면제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상향	부가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상향(21% → 23.7%)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난쟁이

135cm의 키에 형편없는 외모, [왕좌의 게임]의 난쟁이 영웅 티리온 라니스터, 배우 피터 딩클리지의 삶은 순조롭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경멸했고, 그도 자신을 경멸했다. 삶은 시궁창이었다.

그러나 그는 유머를 발견한다.

"더 젊어서는 확실히 문제를 내게 전가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저 유머감을 가져야 할 뿐임을 알게 됐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이 내 문제가 아닌 그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는 자신을 난쟁이이라며 경멸하는 세상에 대응해 분노와 수치를 배우는 대신 작은 남자에 대한 유머, 이를 보충할 언어를 배웠다.

그러자 세상이 달라졌다.

자신의 독특함을 찾아낸 그를 알아봐 주기 시작했고,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그에게 사랑과 열광을 보낸다.

모두가 겪는 청소년기, 슬럼프, 또는 무언가에 실패할 때에 만나는 세상도 저 작은 남자가 만난 세상과 닮았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세상의 일반적인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예민해하며 자신을 부정하고 버린다.

그러나 예술가들은 오히려 이런 상처와 고통을 자랑하고 노래하며 즐긴다.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사랑받느니 지금 내 모습으로 미움받는게 낫다."

Smells Like Teen Spirit을 절규하듯 부르던 커트 코베인.

술취한 친구들을 그대로 보여줬던, 벗겨벗은 청춘을 그대로 보여줬던, 터부를 아름다움으로 치환한 사진작가 라이언 맥킨리.

인내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뻔한 말을 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올라가기 위해 먼저 내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고통과 불안조차 나의 일부라는 담담한 수용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언어를 뛰어넘어 나만의 개성과 언어를 갖고 성장을 이루며 이 세상에 유일한 나 자신의 가능성을 보게 된다.

출처 : 희망우체통

최신 판례 예규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

기준법령부가-47, 2021.07.26

질 의

-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인지 여부

* 카지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관광진흥법」에 따른 총매출액(개소법 § 15) § 8①)

회 신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8, 2021. 7. 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8, 2021.7.13.

[질의]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1안) 제주특별법에 따라 산정

- (2안)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이 타당합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한 퇴직위로금액을 임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퇴직소득으로 인정됨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퇴직급여가 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서면법인-4421, 2021.08.10

질 의

- 법인은 임원에게 퇴직금 5억원과 퇴직위로금 9억원을 지급함

-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은 있으나 퇴직위로금은 별도 지급규정이 없어 퇴직위로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포함하여 신고*하고자 함

* 퇴직급여 8억:퇴직금 5억원 + 퇴직위로금 3억원 (법인령 § 44④2로 계산한 금액)

질의내용

-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은 있으나 퇴직위로금의 지급규정은 없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한도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 0.1 × 근속연수

회 신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위로금 포함)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나,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법상 주식 등록질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질권에 대한 증명 방법'으로서, 이러한 주식 등록질을 신뢰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법령기본-5880, 2021.06.29

질 의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질권이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그 설정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질권이 예외적으로 국세에 우선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면서 「상법」 제340조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등록질'에 따라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록한 것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 여지가 발생함

질의내용

- 국세 법정기일 이전에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면서 해당 질권이 「상법」 제340조에서 정하는 '주식의 등록질'의 방법으로 주식 발행법인의 주주명부등에 등록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법」 제340조 규정의 주식 등록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질권에 대한 증명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주식 등록질을 신뢰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부 받은 날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서면법령법인-4136, 2021.06.29

질의

- A재단은 장학사업 및 학술양성을 위한 재단법인 으

로서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에 해당하며

- A재단은 이사장이 보유한 B법인의 상장주식 일부를 기부*받음.

* 2021.2.17.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기부임

- 이사장은 B법인의 최대주주(17% 보유)이며, 이사장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함께 보유한 B법인의 주식은 총 53%임
- A재단은 기부 받은 B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장학금 지급 및 문화예술 사업에 사용할 계획임.
- 질의당시 0.5%의 지분을 기부 받았고 이후 추가로 기부받아 최고 2.5%까지 취득하였으나 수시 처분 하여 현재 0.5% 보유중임

질의요지

- 지정기부금단체가 2021.2.17.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상장주식을 기부 받는 경우 기부 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기부 받은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2항 제7호 및 제89조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부 받은 날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상속 주택, 상속 후 2·3년 동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상속 주택은 상속 후 일정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포함해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상속 주택은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시점(사망일)로부터 2년, 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 지역은 인구 최대 밀집 지역이며, 주택 공급물량이 한정돼 있다.

사려는 사람은 많은 데 새로 물건을 대기가 어려운 경우 조금만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도 가격은 빠르게 오른다.

주택은 억 단위의 초고가 상품이고, 선호하는 지역도 뚜렷하다. 자주 사고팔면서 가격 급등을 유인하기가 쉽고, 아파트 단지 내 사람들끼리 일정 이상 가격은 팔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종부세는 부유세 목적도 있으나 주택가격 안정도 추구하는데 부동산 투기를 하기 쉬운 형태, 즉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세금으로 일부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1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되면 1주택자로서 누리던 기본공제나 보유공제 등의 혜택 등을 잃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의 경우 수도권 다주택자 종과세를 시행했다.

그런데 상속 등으로 의도치 않게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의 경우 기존의 공제 혜택을 잃고, 종과세 적용 등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경우가 있다. 개중에는 지방의 작은 주택을 상속받았는데도 2주택자가 되어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주택을 한시적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일정 기간이 넘으면 세금을 물리도록 했다.

적용은 올해부터이며, 올해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코로나19 피해 국민, 지방세 납기 연장·징수유예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14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을 위해 올해도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목별 주요 지원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안내했다.

특히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된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고, 추가로 한번 더 연장신청을 해 최대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했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지 세목도 고지 예정이거나 이미 고지했다라도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고지해 납세자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지방세외수입(벌칙금 및 과태료 등)도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별법상 근거 조문과 적용 요령 등을 안내한다.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지방세 감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을 목적으로 지자체 조례를 통한 감면 때 감면 금액을 지방세 감면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방세정 운영에 소외되는 지역 주민이 없도록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 기획재정부, 2022. 2

- 정부는 '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6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시행규칙
 - 상기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22.3월)할 예정입니다.

I 주요 개정내용

1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세부범위 규정

〈 시행령(조특령§ 21④) 개정내용 〉

◇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백신 3대분야)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세액공제율(%)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 사업화 시설	3	5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6	8	16	4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세부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既 발표('21. 7. 26.)

분 야	구 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반도체	메모리	- 16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28단이상 낸드플래시 제조시설 -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제조시설
	시스템	- SoC 반도체 파운드리 7nm이하급 제조시설 -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DDI칩 제조시설 등
	소재·부품·장비	- 반도체용(16nm이하 D램, 128단이상 낸드 등) 웨이퍼 제조시설 - 첨단·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 제조시설 등
배터리	상용배터리	- 고에너지밀도·고출력·장수명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제조시설 - 사용후 배터리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시설 등
	차세대 이차전지	-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시설
	소재·부품	-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이상) 및 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 제조시설 - 전기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분리막·전해액 제조시설 등
백신	개발·생산	- 항원, 핵산, 바이러스백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시설
	원·부자재	-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원부자재 및 면역보조제 제조시설 - 백신 및 백신 원료·원부자재 장비 제조시설

2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 * 일반시설(대·중견·중소 1%·3%·10%)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3%·5%·12%) 적용
- (현행)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방송통신 등 10개 분야 155개 시설
 - (개정안)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바이오·자원순환 등 분야 시설을 추가(신설 28, 삭제 2)하여 11개 분야 181개 시설로 확대

분 야	주요 추가 시설
탄소 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수소·블루수소·부생수소 생산시설 ▶ 수소전기자동차용 고밀도·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제조시설 ▶ 수소가스 유통환원설비 및 환원철을 응용한 제철시설 ▶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제조·양생시설 ▶ 전기저장 가열방식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한 석유화학 기초원료 제조시설 ▶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불소화합물 및 이산화질소 저감시설 ▶ 친환경 냉매 개발, 열교환기 성능 향상 등 히트펌프 시스템 제조시설 ▶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의 연료공급 시스템 제조시설 등

미래차	▶ 고효율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동시스템 제조시설
바이오	▶ 바이오의약품 생산·제조장비 및 품질분석 장비·부품 제조시설 ▶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화장품 소재 등 생산을 위한 바이오파운드리시설
자원 순환	▶ 폐플라스틱의 물리적 재활용을 거쳐 재생원료 등을 제조하는 시설 ▶ 생분해성이 향상된 플라스틱 컴파운드를 제조하는 시설 ▶ 플라스틱 오염물질 발생 저감 포장재 생산시설
핵심 소재	▶ 중희토 함유량을 50% 절감하여 고기능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시설 ▶ 요소수, 중조 등 배기배출물을 저감하는 핵심소재 제조시설

※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 ※ 「'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既 발표('21.12.20)
-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유도, 면세업계 지원 등을 위해 출국 내국인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면세점 구매한도(現 5,000불) 폐지
 - * ('79, 신설) \$500 → ('85) \$1,000 → ('95) \$2,000 → ('06) \$3,000 → ('19.9) \$5,000
- ※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II 기타 개정내용

1 소득세법 시행규칙

□ 공익단체의 결산보고서 등 제출기한 및 지정 취소 절차

〈 시행령(§ 80②③⑤⑦) 개정내용 〉

◇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공익단체 지정 취소*

* 서류 제출의무 미이행 시 추가 의무이행 기한 및 지정 취소 절차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

-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제출의무 미이행 시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추가 제출기한을 시행규칙에 규정
- 공익단체 지정 취소사유 발생 시 국세청은 매년 11.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공익단체 지정 취소를 요청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의무이행여부 보고 추가 이행기한 및 지정 취소 절차와 동일

2 법인세법 시행규칙

- 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를 할증하는 경영권 이전 거래 예외 사유 규정
 - (현행) 상장주식 거래시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20% 할증
 - * ①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거나, ② 최대주주등간의 거래에서 주식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 (개정안)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서 제외
 - *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
 - ②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 ③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등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
 - ④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 ※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세부절차 마련

〈 시행령(§ 109②) 개정내용 〉

- ◇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 (대상)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 사전 신청 감사인
 - (절차) 지정 감사연도의 직전연도 9.1일(1.1.~12.31. 회계연도 법인 기준)부터 절차 개시 → 자료제출, 사전통지 후 11월 중 지정 통지
 - 다만, 지정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시행규칙에 위임
- (지정 방법)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
 - * 소속 공인회계사 수 및 지정 공익법인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지정 공익법인이 6개 연도(자유선임 4년 + 지정 2년)에 균등 배분되도록 지정 수 조정
 - ※ 144개 공익법인(1.1.~12.31. 회계연도 법인 기준) 중 '22년도는 24개 지정 계획
- (감사인 사전신청 요건) ① 또는 ②를 충족하여 국세청에 신청
 - ① 최근 2년 내 공인회계사 3인 이상 공익법인 감사교육 이수
 - ② 최근 5년 내 3개 과세연도 이상 공익법인 감사 실적 보유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확대
 - 희귀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추가
 - * (현행) 고셔병, 부신이영양증 등 11종
(개정안)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신경섬유종증(1형) 3종 추가

5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 금전대차거래에서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기준금리 변경
 -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
 - (현행) 주요 통화별 런던은행간 대출이자율(LIBOR) + 1.5%
 - (개정안)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 + 1.5%
 - * '22년부터 LIBOR금리 산출 중단에 따라 주요 국가별로 산출 중인 대체금리로서 대출, 채권, 파생거래 등 금융계약의 손익, 가격 등을 결정하는 기준(예: 원화의 경우 KOFR)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투자요건 적용기준

〈 시행령(§ 60의2) 개정내용 〉

- ◇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 기준을 각각 10억원, 20명으로 규정
 - 투자 대상(사업용자산의 범위) 및 투자금액의 계산 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

- ① 투자대상으로 인정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
 - 이전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축물 포함) 및 건설 중인 자산
- ② 투자금액 계산 방법
 - 본사이전 2년 전부터의 투자합계액에서 중도 처분한 자산 가액을 차감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세액감면* 대상 지역 확대
 -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
 -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세액감면 대상 지역으로 추가



-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 조정
 - * 해당 과세연도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대기업 5%, 중견 10%, 중소기업 20%)
 -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증가율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특례)
 - (현행) 3.8% → (개정안) 3.0%
 -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수준을 감안하여 조정
 - ※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근로장려금 지급제의 요건인 월 평균소득 산정방법 규정

〈 시행령(§ 100의2④) 개정내용 〉

◇ 근로장려금 지급제의 대상에 연도말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 추가
 * '월 평균 근로소득'의 정의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 월 평균 급여액은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해당 기업에서 받은 총 급여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의 근무월수를 나눈 값으로 규정
 - *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임금·상여 등 모든 근로소득 합계액(소득세법 §20의2㉔)
 -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개월로 보되, 12월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1개월로 봄
 - * 월 15일 미만 근무한 달의 급여와 근무기간은 월 평균 급여액 산정시 제외
 - ** 12월 취업 시 취업일과 관계없이 해당 기업에서 받은 총 급여액이 월 평균 급여액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상세내용

1 소득세법 시행규칙

(1) 사회재난에 따른 연금 인출시 분리과세 한도 등 규정(소득칙 §11의2)

〈 시행령 개정내용(§ 100의2④) 〉

-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추가
- 분리과세가 인정되는 한도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연금 인출 한도와 증빙서류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가입자(부양가족) 3개월 이상 요양에 따른 연금 인출 <input type="checkbox"/> (분리과세 한도) 다음 금액의 합계액 -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 휴직 또는 휴업 월수 x 150만원 - 200만원 <input type="checkbox"/> (증빙서류)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휴직 증명서 등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추가 <input type="checkbox"/>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에 따른 연금 인출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개정이유> 연금 인출 시 분리과세 한도 금액 등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2) 공익단체의 서류 제출의무 추가 이행기한 및 지정 취소 절차(소득칙 §44의2)

〈 시행령 개정내용(§ 80②③⑤⑦) 〉

- | |
|---|
| <input type="checkbox"/>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공익단체 지정 취소
<input type="checkbox"/> 서류 제출기한 및 지정 취소 절차를 시행규칙으로 위임 |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서류 제출의무 미이행 시 추가 이행기한 <input type="checkbox"/> 제출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input type="checkbox"/> 공익단체 지정 취소 절차 <input type="checkbox"/> 국세청장의 지정 취소 요청기한 : 매년 11.30일 <input type="checkbox"/> 지정 취소 요청 시 기재 내용 - 공익단체의 명칭, 주무관청, 지정 취소사유 등

<개정이유> 공익단체 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장애인 증명을 위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류 신설(소득칙 §54)

〈 시행령 개정내용(§ 107②) 〉

- 보건복지부 등이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서류로 장애인 증명 가능
 - * 장애인등록증(보건복지부), 상이자 증명서류(국가보훈처) 등
 - 근로자가 장애인 증명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증명을 위한 서류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장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 서류

<개정이유> 근로자 연말정산 편의 제고

<적용시기> '22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4) 세액공제율을 우대하는 의료비의 증빙서류 신설(소득칙 §58)

〈 시행령 개정내용(§ 118의5⑤⑥) 〉

- 높은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미숙아¹⁾·선천성이상아²⁾(20%)·난임시술³⁾(30%)에 대한 의료비 정의를 신설
 - * 1) 미숙아 : 의료기관의 장이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함에 따라 지급한 의료비
 - 2) 선천성이상아 : 해당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의료비
 - 3) 난임시술 : 「모자보건법」§2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우대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율을 우대하는 의료비의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출생증명서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세무조정반 신청 규정 정비 등(소득칙 §65의3, 법인칙§50의3)

〈 시행령 개정내용(§ 소득령 § 131의3·법인령 § 97의3) 〉

- 세무조정반 지정가능 대상에 법무법인 등* 추가
 -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세무조정반 신청 절차 ○ (정기신청) 매년 11월 30일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 신청 *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12월31일까지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 (신설법인 특례)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회계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 조정반 신청 가능 *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input type="checkbox"/> 법무법인 등* 의 경우에도 신청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 (좌 동) ○ 법무법인 등 추가

<개정이유> 법무법인의 세무조정 허용에 따른 규정 정비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설립하는 법무법인 등부터 적용

- 다만, 규칙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규칙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6) 의제취득가액 적용 대상 소액주주 판단 시점 명확화(소득칙 §69의8)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소액주주 판단 시점 ○ '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input type="checkbox"/> 판단 시점 명확화 ○ '23년 과세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23년 시행

<개정이유> 의제취득가액 적용 소액주주 판단 시점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법인 아닌 단체 비거주자 구성원의 신고 간소화(소득칙 §87②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 182②)〉

법인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 신고하는 거주자구성원(대표신고자)은 자신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류를 제출

* 대표신고자가 구성원별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단체의 납세자 관할 세무서

○ 제출 신고서류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의 종합과세 신고·납부 ○ 거주자의 신고 납부 규정 준용 <신 설>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법인 아닌 단체 비거주자 구성원 종합과세 일괄 신고·납부 ○ (제출서류) - 일괄 신고 동의서 (동의의사, 납세자 번호 기입) - 비거주자 구성원별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서 등 거주자 종합과세 신고·납부 규정에 준하는 서류

<개정이유> 소득신고 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제도 보완(소득칙 §94의3)

〈 시행령 개정내용(§ 203의2) 〉

원천징수 시 복수의 금융회사에 기본공제 분할적용 허용

* 예 : (현행) A증권사에서 5천만원 공제 → (개정) A社 2천만원, B社 3천만원 공제

○ 개인별 기본공제 한도*를 관리하는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 ①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5,000만원 공제), ② 기타 금투소득(250만원 공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신 설>	<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가 주식등의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워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사유 ○ 주식등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 예약결제원에 예약되지 않은 주식등이 계좌에 입고된 경우 ○ '23. 1. 1일 전에 출자, 증자·감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9) 자동차학원 수입금액검토표 폐지(소득칙 §100)

현 행	개 정 안
□ 자동차학원은 사업장 현황 신고시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하도록 규정	<삭 제>

<개정이유> 불필요한 서식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규칙

(1) 기부금영수증 포함내용 명확화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법
인칙 §19의3, 소득칙 §58)

현 행	개 정 안
<p>□ 기부금영수증을 단순히 서식*으로 규정</p> <p>* 「법인칙」: [별지 63호의3] 서식 「소득칙」: [별지 45호의2]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 지점이 기부금을 받는 경우, 본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21.7.9. 이후 지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7.9.)</p>	<p>□ 기부금영수증 포함내용을 본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 형식만 서식으로 규정</p> <p>○ 기부금영수증은 아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p> <p>①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소재지</p> <p>② 발급 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 지점·분사무소가 기부받은 경우 지점·분사무소 기준의 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를 추가로 포함 가능</p> <p>③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p>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포함 내용 명확화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규칙 시행일 이전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2) 상장주식 거래시 시가를 할증하는 경영권 이전 거래의 예외사유 규정(법인칙 §42의6)

현 행	개 정 안
<p>□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시가 할증</p> <p>○ ①, ②의 경우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20% 할증</p> <p>①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p> <p>② 최대주주 등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추가〉</p>	<p>□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의 예외 사유 규정</p> <p style="text-align: right;">- 다만, 회생계획 등을 이행중인 법인*이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거래하는 경우는 할증 제외</p> <p style="text-align: right;">* 「법인세법 시행령」 §10①(1)~(3) 및 (6)에 해당하는 법인</p>

〈개정이유〉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 대한 판정 합리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합리화

①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사항에 비재무적 사항 포함(국조칙 §2의2)

현 행	개 정 안
<p>□ 금전대차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사항</p> <p>○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채무자 신용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구체화</p> <p>○ (좌 등)</p> <p>○ 채무자의 신용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기업군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 평가 상향 요인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압목적 지원

<개정이유> 금전대차 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 시 고려사항 구체화(OECD이전가격지침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간주정상이자율 산정 기준 변경(국조칙 §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대여) 당좌대출이자율(연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 (자금차입) 12개월 만기 통화별 LIBOR 금리* +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 - 단, LIBOR가 없는 통화의 경우 미국달러화 기준 LIBOR금리 + 1.5% 	<input type="checkbox"/> 간주정상이자율 기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차입통화별 지표금리 + 1.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통화</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표금리</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한국 KRW</td> <td style="text-align: center;">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미국 USD</td> <td style="text-align: center;">미국 국채 담보익일물RP금리(SOF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유럽연합 EUR</td> <td style="text-align: center;">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EST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영국 GBP</td> <td style="text-align: center;">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SONIA)</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스위스 CHF</td> <td style="text-align: center;">은행간 익일물 RP금리 (SARON)</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본 JPY</td> <td style="text-align: center;">금융기관간 익일물 무담보 콜거래금리(TONA)</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그 밖의 통화는 미국 달러화 기준</p>	통화	지표금리	한국 KRW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미국 USD	미국 국채 담보익일물RP금리(SOFR)	유럽연합 EUR	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ESTR)	영국 GBP	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SONIA)	스위스 CHF	은행간 익일물 RP금리 (SARON)	일본 JPY	금융기관간 익일물 무담보 콜거래금리(TONA)
통화	지표금리														
한국 KRW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미국 USD	미국 국채 담보익일물RP금리(SOFR)														
유럽연합 EUR	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ESTR)														
영국 GBP	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SONIA)														
스위스 CHF	은행간 익일물 RP금리 (SARON)														
일본 JPY	금융기관간 익일물 무담보 콜거래금리(TONA)														

<개정이유> 런던은행 간 대출이자율 고시 중단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기준금리 변경

<적용시기> '22.1.1. 이후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③ 지급보증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 시 고려사항 보완(국조칙 §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지급보증 거래에 관한 정상가격 산출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등급) 재무적·비재무적 정보 <추 가> ○ (예상부도율)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기업군의 지원가능성 ○ (보증금액 예상회수율) 피보증인의 재무상태와 유형자산의 규모, 산업의 특성, 담보 제공 여부·시기·만기 등 	<input type="checkbox"/> 지급보증 거래 시 고려사항에 암묵적 지원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상향 요인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지급보증 거래에서 정상가격 산정 시 고려사항 구체화(OECD이전가격지침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④ 자금통합거래에 관한 자금통합참여자의 편익 산정 시 고려사항 신설(국조칙 § 3의2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 11조의2) >

<input type="checkbox"/> 자금통합거래* 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 다음 구분에 따른 산출 방법을 적용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들의 집단이 유동성 관리를 목적으로 각 구성 기업이 개설·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를 기업집단 차원에서 통합 관리 <input type="radio"/> (자금통합모계좌가 있는 경우)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 <input type="radio"/> (자금통합모계좌가 없는 경우)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기대편익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자금통합거래에 관한 자금통합참여자의 편익 산정 시 고려사항 <input type="radio"/> 자금통합모계좌가 있는 경우 - 자금통합거래의 기간,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상호 보증여부 등을 고려한 신용 정도 - 자금통합거래 참여한 각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사용한 자산 및 부담한 위험 정도 <input type="radio"/> 자금통합모계좌가 없는 경우 -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함으로써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비용에 비례하여 산출

<개정이유> 다국적기업그룹 내 자금통합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규정(OECD 이전가격지침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구체화(상증칙 §16의3)

< 시행령 개정내용(§ 52③) >

<input type="checkbox"/>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의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및 사용기한까지의 연도별 임대료를 감안하여 환산 <input type="radio"/> 구체적 계산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선박 등에 대한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 $\text{임대보증금} + \sum \frac{\text{각 연도의 임대료 수입}}{(1 + \text{이자율})^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 : 평가기준일 이후 해당 자산의 법인세법령 상 기준내용연수까지의 잔여 기간 ○ 이자율 : 3%

<개정이유>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구체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세부절차 마련

① 주기적 감사인 지정 수 및 방법(상증칙 §14의2①②⑤, 별표1, 별표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주기적 감사인 지정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지정 대상 공익법인이 6개 연도(자유선임 4년, 지정선임 2년)에 균등 지정 되도록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5월, 약 24개 공익법인 지정 (12월말 법인 기준 자산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144개) <input type="checkbox"/> 지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순서가 빠른 공익법인부터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 ○ 지정 순서: ❶ → ❷ 순으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전년도에 지정 연기*된 공익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직전 자유선임기간 감사계약 未종료, 2)감리 진행 중인 경우 ❷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 ○ 감사인 지정점수: $\frac{\text{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1 + 3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기간별 감사인점수: 공인회계사별 경력에 대한 가중치 반영 * n: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공익법인 수

<개정이유>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세부집행 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감사인에 대한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배제기간 규정(상증칙 §14의2③)

〈 시행령 개정내용(§ 43의2③) 〉

□ 다음 사유가 있는 감사인은 지정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① 감사보고서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로 공소가 제기된 자
- ②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인 지정통지 후 2주 내 계약 미체결
- ③ 공익법인 감리 결과 금융위원회 등에 회계기준 위반 통보
- ④ 부당한 비용부담 등을 청구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 사유별 지정 배제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 감사인에 대한 조치* 확정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외부감사법」 §29③ 제1호 내지 제4호 :등록취소, 업무정지 건의, 손해배상기금 추가 적립, 업무제한 ② 감사계약 체결 기한을 도과한 날로부터 1년간 ③ 해당 감사인에 대한 조치* 확정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외부감사법」 §29③ 제1호 내지 제6호 :등록취소, 업무정지 건의, 손해배상기금 추가 적립, 업무제한, 경고, 주의 ④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 「공인회계사법」 §48② 제1호 내지 제3호

<개정이유>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세부집행 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감사인의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사전 신청요건 규정(상증칙 §14의2④)

〈 시행령 개정내용(§ 43의2③) 〉

□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감사인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신청할 필요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 감사인의 사전 신청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과거 2년 내 소속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 실무교육*을 이수 * 공인회계사회 수행 ② 과거 5년 내 3개 과세연도 이상 공익법인 회계감사 실적 보유

<개정이유>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세부집행 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관련 의견반영 사유 규정(상증칙 §14의2⑦)

〈 시행령 개정내용(§ 43의2⑤⑥) 〉

-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사전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기준일(본 통지 기한) 4주 전까지 공익법인과 감사인에게 지정 예정 내용을 통지할 필요
 - (의견 제출) 사전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반영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가능 ① 직무제한* 등으로 인해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공인회계사법」 §33조 등 ② 보수 등 계약조건에 대한 이견이 큰 경우 ③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이유>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세부집행 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감리 대상 선정 및 점검방법 규정(상증칙 §14의3)

〈 시행령 개정내용(§ 43의2⑤⑥) 〉

- 기획재정부장관은 감리 및 자료제출 등의 요구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
- 감리 대상 선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회는 매년 1분기 다음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 ① 감리 실시에 관한 연간 계획서 ② 감리 대상 선정안 ③ 직전연도 감리 수행에 따른 시정·개선 결과

<개정이유>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세부집행 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1) 멸실 예정 주택의 기간 내 미멸실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신설(중부칙 §4의4)

〈 시행령 개정내용(§ 4①) 〉

-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 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
 - * 공공주택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자
-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멸실 예정 주택의 기간 내 未멸실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으로 주택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②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주택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③ 기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

〈개정이유〉 종합부동산세 과세 합목적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를 위한 제출 서류 신설(중부칙 §4의5)

〈 시행령 개정내용(§ 4의2③)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적용시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 또는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
 - * 상속받은 분양권·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포함
 - **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2년, 그 외 지역: 3년
- 주택 수 제외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신고시 제출 필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신청서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출서류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 면세 대상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 범위 구체화(부가칙 §34㉓)

〈 시행령 개정내용(§ 45)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 구체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확대(부가칙 §42, 별표2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치료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희귀병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등 〈추 가〉 〈추 가〉 〈추 가〉 	<input type="checkbox"/> 면제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 대상 희귀병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전신 중증 근무력증 -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 신경섬유종증 1형

〈개정이유〉 희귀병 질환자의 치료제 비용부담 완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표준인증 취소사유 규정(부가칙§50㉓)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사업자의 표준인증 취소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사업자는 국세청장에게 표준인증을 받고 사전등록 ○ 거짓으로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한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시스템이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서나 다른 시스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이유> 행정처분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

(4)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서식 신설(부가칙§66의2, 별지제37호의3신설)

< 법 개정내용(§ 53의2⑦) >

국세청장은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관 중인 거래명세 원자료(raw data)를 전자파일로 제출 가능

<개정이유> 법에서 위임한 거래명세서 서식 및 제출방법 규정

<적용시기> '22.7.1.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 일반·신성장·국가전략기술 공통 R&D비용 안분방법 규정(조특칙 §7)

< 시행령 개정내용(§ 9⑫) >

일반·신성장·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공통비용에 대한 안분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일반 R&D와 신성장·원천기술 R&D 공통비용* 안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과 일반 연구개발에 동시에 사용된 인건비·재료비 등 ○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개발비) 일반 R&D 비용 	<input type="checkbox"/> 국가전략기술 R&D의 공통비용 발생시 안분방법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신성장 R&D와 국가전략 기술 R&D가 공통인 경우 : 신성장 R&D비용 ii) 그 외의 경우 : 일반 R&D비용

<p>○ (재료비 등) 일반 및 신성장 연구인력 인건비를 기준으로 안분</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 : $\frac{\text{공통}}{\text{재료비}} \times \frac{\text{신성장 인건비}}{\text{신성장 인건비} + \text{일반 인건비}}$ =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p> <p>㉡ : [공통 재료비 - ㉠] = 일반 R&D비용</p> </div>	<p>○ (재료비 등) 일반, 신성장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 인건비를 기준으로 안분</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 : $\frac{\text{공통}}{\text{재료비}} \times \frac{\text{국가전략기술 인건비}}{\text{국가전략기술 인건비} + \text{신성장 인건비} + \text{일반 인건비}}$ = 국가전략기술 R&D비용</p> <p>㉡ : $\frac{\text{공통}}{\text{재료비}} \times \frac{\text{신성장 인건비}}{\text{국가전략기술 인건비} + \text{신성장 인건비} + \text{일반 인건비}}$ = 신성장 R&D비용</p> <p>㉢ : [공통재료비 - ㉠ - ㉡] = 일반 R&D</p> </div>
--	--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통비용 안분방법 규정

<적용시기> '21.7.1.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ESG 교육비용을 인력개발비 대상에 추가(조특칙57)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의 범위*</p> <p>* 시행령 별표 6에서 시행규칙 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임차비용 ○ 내일채움공제 납입비용 ○ 내국인이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ESG 교육비용 추가</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p>○ (좌 동)</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임직원 교육 경비 <p>* 「산업발전법」 제19조에 따라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ESG)</p>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ESG기반 경영여건 대응역량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6)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화시설 ○ 155개 시설 -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신성장 사업화시설 확대 ○ 181개 시설로 확대 - 신성장·원천기술(영 별표7)에서 제외된 2개 기술*의 사업화시설 삭제 * 난삭 메탈소재 가공장비 설계·제조기술, LNG 운반선용 압축신장기 - 탄소중립 기술 등 신규 도입신성장·원천 기술 사업화 시설 등 28개 추가 * 수소 환원제철 시설, CO2 반응경화시멘트 제조시설 등

<개정이유> 혁신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 규정(조특칙 별표 6의2)

< 시행령 개정내용(§ 21④) >

<input type="checkbox"/>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규정 ○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재부·산업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총 31개 시설) ○ (반도체) 16nm이하급 D램 및 128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제조하는 시설 등 19개 시설 ○ (이차전지)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 시설 등 9개 시설 ○ (백신)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제조시설 등 3개 시설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既 발표('21.7.26.)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 구체화
 <적용시기> '21.7.1. 이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의 생산량 측정방법 및 제출자료 규정(조특칙§12)

〈 시행령 개정내용(§ 21④) 〉

- 해당기술 제품 외의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의 생산량 자료 작성·보관 및 제출 의무
- 생산량의 구체적 측정방법 및 제출자료는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해당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외의 제품 생산에 병행사용하는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의 생산량 측정방법 및 자료 보관·제출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기간) 해당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누적하여 측정 * 투자완료일이 '22.4.1. 이전인 경우에는 '22.4.1. ○ (측정대상) 해당시설을 거쳐 저장·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진 최초의 제품 또는 반제품 ○ (측정단위) 개수(고체류), 부피 단위 또는 동일한 부피의 용기에 담긴 용기의 개수(액체류·기체류) ○ (자료 보관기간) 측정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 (제출자료*) 생산량 실적총괄표(별지 제8호의10 서식) * 시행령 §21④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 중 마지막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 제출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생산량 측정방법 등 규정

<적용시기> '21.7.1. 이후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항목 조정(조특칙§13의9, 별표 8의9)

〈 법·시행령 개정내용(법 § 25의6, 영 § 22의10③)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
- 국외발생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현행) 국내 발생비용만 세액공제 → (개정) 국내·국외 발생비용 모두 세액공제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외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 광고·홍보비용, 접대비 ○ 인건비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소득 - 퇴직급여충당금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잉여금 처분 성과급 	<p><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제외항목 조정</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인건비 항목 조정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 부담금 및 퇴직연금계좌 납부 부담금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개정이유> 시행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규정 정비

<적용시기> (퇴직연금·성과급 관련)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 조정(조특칙 §14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증대세제* 중소기업 적용 특례 * 해당 과세연도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대기업 5%, 중견 10%, 중소기업 20%) ○ 중소기업은 임금 증가율이 3.8%*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가능 *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조특령 §26의4㉞)	<input type="checkbox"/> 적용기준 조정 ○ 3.8% → 3.0%

<개정이유> 최근 3년간('19~'21년)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반영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투자요건 적용기준 신설(조특칙§24)

〈 시행령 개정내용(§ 60의2④) 〉

- 본사 지방이전 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 기준 :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 근무인원 20명 이상
- 투자 대상(사업용자산의 범위) 및 투자금액의 계산 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투자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축물, 차량 등 포함)과 건설 중인 자산 <input type="checkbox"/> 투자금액 계산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 산입기간 동안의 투자합계액에서 중도 처분한 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을 차감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투자금액 = A - B</p> <p>A : 투자금액 산입 기간 동안의 투자합계액</p> <p>B : 투자금액 산입 기간 동안 취득한 이전본사의 자산 중 중도 처분한 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p> <p>* 투자금액 산입 기간 : 본사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과세연도까지</p> </div>

<개정이유> 투자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및 투자금액의 계산 방법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부터 적용

(9)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세액감면 대상 지역 추가(조특칙§2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 입주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 <hr/> 세액감면 대상 지역 1. 나주일반산업단지 2.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3.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4. 북평국가산업단지 5. 북평일반산업단지 6. 나주혁신산업단지 7. 강진산업단지 8.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9. 담양일반산업단지 10.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11. 동함평일반산업단지 12. 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hr/> <추 가>	<input type="checkbox"/> 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추가 <hr/> ○ (좌 동) <hr/> ○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개정이유>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세액감면 대상 지역으로 추가

* '21.12.30일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고시 시행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

(10) 청년 자산형성 제도 가입자의 의견제시 절차 규정(조특칙 §42의2)

〈 시행령 개정내용(§ 93의6④, § 93의7⑤) 〉

<input type="checkbox"/> 청년 자산형성 제도(청년장기펀드·희망적금) 소득요건 판단 절차 ○ ①금융기관의 가입자 소득 확인 요청, ②국세청장의 소득요건 충족여부 통보, ③가입자의 의견제시 ○ 의견제시의 구체적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가입자의 의견제시 절차 ○ (적용대상) - 재형저축, 소장펀드 <추 가> ○ (내용) 국세청장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 제출	<input type="checkbox"/> 적용 대상에 청년 자산형성 제도 추가 ○ (적용대상) - 재형저축, 소장펀드 - 청년장기펀드·희망적금 ○ (좌 등)

<개정이유> 청년 자산형성 제도의 가입자 의견제시 절차 규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요건인 월 평균 근로소득 규정(조특칙§45의3)

< 시행령 개정내용(§ 100의2④) >

<input type="checkbox"/>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에 연도말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 추가 ○ '월 평균 근로소득'의 정의를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월 평균 근로소득” 규정 ○ 산정방식 = $\frac{\text{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해당 기업에서 받은 총급여액}}{\text{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의 근무월수}}$ ○ (근무월수)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개월로 봄 - 월 15일 미만 근무한 달의 급여 및 개월 수는 월 평균 근로소득 산정시 제외 - 다만, 12월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1개월로 봄

<개정이유> 근로장려세제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12)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자료요청 대상기관 정비(조특칙§45의6)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자료요청 대상기관 및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관련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관련 자료 ○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차계약관련 자료 ○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관련 자료	<input type="checkbox"/> 기업형임대사업자 삭제 ○ (좌 등) < 삭 제 >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 반영

(1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액 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규정 보완(조특칙§45의9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 시 20% 세율로 추가 과세 *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 국세환급금 이자 등 - 법인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등 ○ 기업소득 차감항목 - (법인세액)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input type="checkbox"/> 기업소득 차감항목 보완 ○ (좌 동) - (법인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 -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

<개정이유> 기업소득 환류여력 반영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종목 규정(조특칙 §47)

〈 시행령 개정내용(§ 104의20) 〉

<input type="checkbox"/>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 종목을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구체적인 종목명은 시행규칙에서 열거하도록 위임 * ①「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종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목 및 ②「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종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목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운동경기부 운영비의 범위 ○ (운동경기부 운영비) 경기장 및 훈련장 사용료, 식비 등 <신 설>	<input type="checkbox"/> 대상 종목도 규정 ○ (좌 동) ○ 운동종목 및 이스포츠종목 - (운동종목) 육상, 역도, 핸드볼 등 57개 종목 - (이스포츠종목) 리그 오브 레전드 등 12개 종목

<개정이유> 과세특례 대상 운동종목을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이관하고, 과세특례 대상 이스포츠종목을 규정

<적용시기>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5)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면세사업 확대(조특칙 별표10)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수자원 공사의 면세사업 <input type="checkbox"/> 「한국수자원공사법」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업 <input type="checkbox"/> 「한국수자원공사법」제9조제1항제12호 및 「수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노후 지방상수도의 개량·관리·정비사업 <추 가>	<input type="checkbox"/> 면세사업 범위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수도법 시행령」제67조제5항에 따라 국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개정이유> 상수도 관련 기관간 업무조정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등 관세감면 품목 지정(조특칙 별표13)

〈 법 개정내용(§ 118) 〉

-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일몰연장 :
 - 감면율: 50% / 수혜대상: 중소·중견기업
 - 적용기한 2년 연장: '21.12.31. → '23.12.31.
- 감면대상 품목은 시행규칙으로 위임(조특칙§50의4, 별표1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50%) <input type="checkbox"/> 총 4개분야* 19개 품목 *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input type="checkbox"/> 관세감면 품목 정비 <input type="checkbox"/> 총 3개분야* 16개 품목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용 품목 감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 임시풀, 스프링보드	- 4개 품목 삭제 : 저철분 유리, 단일진공관, 슬립링, 로빙 - 1개 품목 추가 : 수소압축기용 유압모터 <input type="checkbox"/> 종료된 국제행사용 품목 감면 정비 <삭 제>
---	---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및 종료된 행사장비 품목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17)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기관 확대(조특칙 별지제60호의23서식)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기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방부,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추 가>	<input type="checkbox"/> 발급기관 확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좌 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방부에서 위임한 기관(군인공제회*) * 국방부·병무청의 장병 복지 지원사업을 대행하는 기관

<개정이유> 가입자격 확인서의 비대면 발급*을 허용하여 장병들의 편의 제고

* 나라사랑포털 어플(운영주체: 군인공제회)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발급 가능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1) 장애인 전용 승용차 처분사실 신고서류 간소화(개소칙 별지 제22호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처분사실 신고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 * ①신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②노후차의 자동차 등록원부	<input type="checkbox"/>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관세법 시행규칙

(1)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수입물품 관세면제(관세칙 §43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제경기대회 관련 물품 관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물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추 가> ○ 평창동계올림픽대회 ○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 ○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input type="checkbox"/> 관세 면제 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대회운영물품 등 (예: 전시물품, 야영장비) <input type="checkbox"/> 종료된 국제행사 감면 정비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5px;"> <삭 제> </div>

<개정이유> 국제행사 신규 지원 및 종료된 행사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2) 물품가격 산정방식 명확화(관세칙 §45②, §79의2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물품가격' 기준 적용(소액물품 면세, 탁송품 특별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 	<input type="checkbox"/> 산정방식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가격 = 총 과세가격 - (국제운송비 + 보험료)

<개정이유> 직구물품 등의 물품가격 산정방식(범위) 명확화

(3) 개인의 직구물품 관세 환급대상 규정(관세칙 §58의2 신설)

< 법 개정내용(§ 106의2) >

<input type="checkbox"/>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반품)되는 경우, 관세 환급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수출(반품) 후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아 관세환급되는 직구물품 대상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물품

<개정이유> 관세환급 대상 구체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

(4) 출국 내국인 대상 보세판매장 구매한도 폐지(관세칙 §69의3 삭제)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내국인의 시내 및 출국장 보세판매장(면세점) 구매한도 ○ 미화 5천 달러	<input type="checkbox"/> 구매한도 폐지 <삭 제>

<개정이유>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

(5) 항공기부품 관세감면 품목번호 변경(관세칙 별표1)

< 법 개정내용(별표 관세율표) >

<input type="checkbox"/> WCO(세계관세기구)의 HS 2022 반영 및 세목 간소화를 위한 관세율표 개정 ○ 별표 관세율표: 6,896개 세목 → 6,980개 세목 ※ HS* 2022 개정사항 반영: 세목신설(+226개), 세목삭제(△142개) * 품목분류(HS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대상 관세감면 물품 ○ (감면품목) 총 177개	<input type="checkbox"/> 관세율표 개정 반영 ○ 품목번호 변경(2개 품목)			
	연 번	현행번호	변경번호	비고
	174번	940510	940511, 940519	라이트류 (light)
	175번	940560	940561, 940569	

<개정이유> 관세율표 개정에 따른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6) 관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 범위 조정(관세칙 §39④, 별표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관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 ○ 세레자임 등 고서병환자 치료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등	<input type="checkbox"/> 관세 면제 대상 추가 ○ (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전신 중증 근무력증 및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개정이유> 희귀병 환자의 치료제 비용 부담 완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7) 관세법령 용어 정비(관세칙 §48의2, §48의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갑 ○ 호박 	<input type="checkbox"/> 한자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갑(鼈甲) ○ 호박(琥珀)

<개정이유>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2월 11일 (금)	2월 14일 (월)	2월 15일 (화)	2월 16일 (수)	2월 17일 (목)
미 달 러 (USD)	1196.00	1199.60	1198.30	1198.50	1196.90
일 본 엔 (JPY)	1030.46	1038.57	1037.2	1036.63	1036.77
영 국 파 운 드 (GBP)	1621.24	1626.42	1621.48	1623.25	1626.35
캐 나 다 달 러 (CAD)	939.85	941.60	941.50	942.40	943.70
홍 콩 달 러 (HKD)	153.43	153.77	153.58	153.62	153.43
위 안 화 (CNH)	187.96	188.44	188.31	188.45	188.81
유 로 화 (EUR)	1365.17	1361.31	1354.62	1361.38	1362.43
호 주 달 러 (AUD)	856.40	855.97	854.09	857.47	862.31
싱 가 폴 달 러 (SGD)	888.92	890.77	889.54	891.21	891.41
말레이시아링기트 (MYR)	285.89	286.33	285.96	286.29	285.98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지방세 지원을 강화한다

- 행정안전부, 2022. 2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올해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 ▶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작년말까지 총 1,629만건, 약 1조 9,672억원 규모의 지방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지원을 이어 오고 있다.
 - ※ 기한연장 등 1,379만건/1조8,066억원, 지방세 감면 250만건/1,606억원, 세무조사 유예 725건
 -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목별 주요 지원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2월 14일에 안내한다.

- 특히,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된다.

(1) 지방세 부담 완화 :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

- ▶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의 신고 세목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다.
- ▶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지 세목의 경우에도 이미 고지하였거나 향후 고지 예정인 지방세 등에 대해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하여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 ※ 지방세외수입도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한 납세자 지원을 위해 개별법상 근거 조문, 적용요령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



〈 사례 〉

A씨는 부친의 사망(1.25.)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당장 취득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어 관할 시·군·구에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초 신고·납부기한(7.31.)을 연장 받았다.

(2) 세무조사 유예 등

- ▶ 또한,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하는 등 방법,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사례 〉

청주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가'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했으며, '나' 회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부담을 줄여 주었다.

(3) 지방세 감면

- ▶ 나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으로 인한 지자체 조례 감면 시 감면금액을 '지방세 감면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 지자체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감면 가능

〈 사례 〉

제주도는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에 직접 사용하는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하는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

(4) 납세자 권익 보호

- ▶ 아울러, 지방세정 운영에 소외되는 지역 주민이 없도록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